

# 율곡 향약에 나타난 사회사상 연구

유성선 (강원대 철학과)

주제분  
류

동양철학 한국철학

주요  
어

사회사상, 우환의식,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란상휼

요약  
문

율곡은 화민성속(化民成俗)을 목적으로 「서원향약」, 「해주향약」, 「사창계약속」, 「해주일향약속」을 제정, 실시하였다. 율곡은 향민을 근본으로 하지 않는 향약은 향약 본래의 취지를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형식화된 양민없는 교민(先養民, 後教民)은 오히려 향약의 목적인 화민성속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곡은 향약을 지역의 특성에 알맞도록 입약하여 실시하였으며, 내용 또한 향민을 위한 4대덕목 중의 하나인 환란상휼 중심의 상호구휼을 중시하였다. 그렇다면 율곡 향약과 사회사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율곡 향약에 담긴 그 사회사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율곡의 향약은 그의 사회사상에 온전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4대덕목 중 덕업상권은 그의 사상을 근본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예속상교는 교화와 더불어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실상규와 환란상휼은 사회사상과 관련된 양민(養民)·애민(愛民)의식을 지니고 있다.

본 논고는 율곡 향약에 나타난 사회사상의 일단을 고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 결과 율곡 향약은 사회사상의 이론적 기반이 되며, 향약론은 사회사상의 일관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율곡 향약에는 사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인식과 개혁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즉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고 인간관계를 모든 가치의 근원에 두었으며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율곡 향약의 사회사상 연구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 1. 시작하는 말

유학은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대적인 과제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도덕적 주체성의 강조와 도덕적 형이상학을 주제로 한 일종의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가의 천인합일, 만물일체의 정신은 인간이 지닌 도덕적 주체성의 무한전개이며, 우주 질서와 인간 질서를 합일하려는 노력으로써 자기 자신과 타인, 사회를 윤곽하게 하고 나아가 우주만물과 일체를 형성하는 정신적 경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의 인본주의, 덕치와 예치의 교화 및 대동사회와 천인합일의 이상 등은 합목적적인 사회 원리로서 현실 적용 가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유학의 현실 적용 가능성의 한 지류로써 예속을 보급하고, 농민들을 향촌사회에 긴밀한 체계를 지니게 하여 자생적인 생산과 분배를 강조하여 공동체로 결속,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향약이 실시되었다. 향약은 향민들이 예를 바탕으로 화목한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협동정신에 기초한 자치규약이다.

본 논고에서는 율곡 향약의 이론적 구조를 통해 도덕률의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선(善)과 악(惡)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현실세계에서 도덕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과연 그러한 이론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따라서 이 논의는 자연히 21C 윤리에 대한 일단의 모색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인간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치밀한 고민이 성리학의 주된 관심이었다. 유학은 이론과 실천을 일치시키려 노력한다. 율곡도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정심장(正心章) 다음에 검신장(檢身章)을 마련하여 지행(知行)이 동일함을 주장했다.<sup>1)</sup> 율곡은 지와 행의 동시적 진행을 강조한다. 즉 지가 행에, 행이 지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승적인 작용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 지식의 증가는 도덕 행위를 촉진하고, 도덕 실천은 도덕 지식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곧 사회사상의 기반이 된다.

이 글은 우선 율곡의 만년사상이라 할 수 있는 향약에 나타난 사회사상을 살펴보고, 향약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율곡의 견해를 서술한 다음, 사회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율곡 향약의 의의를 고찰하기로 한다.

## 2. 율곡 향약론의 이론적 기초

율곡은 리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기는 선후의 구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퇴계의 이발기수(理發氣隨)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기발이승(氣發而理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발(發)은 모두 기발(氣發)이며, 기의 발처에서 리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 율곡에서의 리는 스스로 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리인 성(性)도 스스로 발할 수 없다. 성(性)은 다만 심(心)이 발할 때 그것을 타고 나타날 뿐이다. 왜냐하면 심은 기이고 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이기 때문이다. 심이 발하여 정(情)으로 나타날 때, 성(性)은 그것을 타고 나타날 뿐 스스로 발할 수 없다.

율곡은 비록 기발만을 주장했지만 그 발하는 까닭(所以)으로써 리를 놓치지 않았고, 기국(氣

1) 『栗谷全書』 1, 卷22, 「聖學輯要」 4, ‘修己功効章’, 496쪽 下. “知行雖分先後, 其實一時並進, 故或由知而達於行, 或由行而達於知.” \*以下『全書』로 통일함.

局)을 주장하면서 리통(理通)을 항상 전제하고 있었다. 더욱이 리가 기의 주재자이고 근거리는 주자학의 존재론적 규정이나 리가 기보다 귀하다는 가치론적 규정을 다 승인하고 있다. 다만 리를 절대화하고, 이를 위해 무위의 리에 운동성을 부여한 퇴계의 이기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를 강조한다는 데에 율곡 이기론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율곡은 리 없는 기가 없다는 점에서, 본연지성이 기질에 떨어진(墮在) 기질지성만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율곡은 기질지성을 말함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악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율곡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기질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기질지성에 주목하고 강조하는 까닭은 심성론에서 전개되는 사칠론(四七論)·심성정의일로설(心性情意一路說)·인심도심상위종시설(人心道心相爲終始說)·교기질론(矯氣質論)과 깊이 관계되기 때문이다.<sup>2)</sup> 율곡이 생각하기에, 수기의 최종적인 목표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sup>3)</sup> 기는 가변적이다. 율곡은 수기를 통해 불완전한 기를 본래의 상태로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교정 기준은 당연히 리이다. 그래서 율곡은 “본연의 성은 비록 사물에 가리워지고 기에 구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을 추구하다 보면 순선하여 악이 없다. 그러므로 그 성을 회복하라고 한 것이다. 기에 이르러서는 혹은 탁하기도 하고 혹은 뒤섞이기도 하며, 이미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갈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를 회복하라고 하지 않고, 기질을 교정하라고 한 것이다.”<sup>4)</sup>라고 말했다.

이처럼 율곡은 ‘무엇이 선인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선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선을 실천할 것인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 내재된 선한 본성을 어떻게 체현(體現)할 것인가?’에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의 독특한 관점은 도덕에서 시작하여 도덕으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율곡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선한 본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사욕을 주체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자신의 학문목표를 두었다. 이것은 자신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율곡이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선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고민한 흔적을 역력히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악(惡)’의 문제에 많은 관심과 대처방안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향약의 발단은 송대의 「남전여씨향약」<sup>5)</sup>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주희(1130 -1200)에 의해 「증손여씨향약」<sup>6)</sup>이 제정되어 향약을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희의 「증손여씨향약」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통치이데올로기였던 성명(性命)의리지학(性命義理之學)의 실천모형이 되었다. 조선에서 향약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게 된 시기는 성리학과 그 기반 위에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사림파가 중종 대(1488-1544)에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이

2) 拙稿, 『栗谷 李珥의 修養工夫論』, 國學資料院, 2002, 57-58쪽.

3) 『全書』 1, 卷14, 「自警文」, 300쪽 下. “先須大其志, 以聖人爲準則, 一豪不及聖人, 則吾事未了.”

『全書』 1, 卷13, 「序」 ‘別洪表叔序’, 267쪽 上. “衆人之同於聖者性也. 異於聖者氣也. 性同一理, 修之則皆至於聖, 氣分清濁, 盪之則或陷於狂, 吾之至此者, 氣之所使也.”

『全書』 2, 卷27, 「擊蒙要訣」, ‘立志’ 제1장, 82쪽 上-下 “蓋衆人與聖人, 其本性則一也. 雖氣質不能無清濁粹駁之異, 而苟能眞知實踐, 去其舊染而復其性初, 則不增豪末, 而萬善具足矣. 衆人豈可以不以聖人自期乎. 故孟子道性善, 而必稱堯舜以實之曰, 人皆可以爲堯舜, 豈欺我哉.”

4) 『全書』 2, 卷31, 「語錄」上, 230-231쪽 下-上. “曰. 本然之性, 雖物蔽氣拘, 而推其本, 則純善無惡, 故曰復其性也. 至於氣, 則或濁或駁, 已判於有生之初, 故不曰復其氣, 而曰矯氣質也.”

5) 宋熙寧 9年 12月(1076年)에 呂大鈞 4兄弟가 陝西省 藍田縣에서 敎化의 목적으로 4대덕목을 規約으로 정하였다.

6) 『朱子語類大全』 卷74, 「增損呂氏鄉約」, 762-766쪽.

들 조광조(1482-1519)를 중심으로 한 사림파는 사창제의 실시, 유향소 복립 운동, 소격서 철폐 등을 통하여 성명의리지학(性命義理之學)의 추구하고 인심의 교화를 위해 향약을 시행하였다.

먼저 사림파의 주도로 시행된 중종대의 향약<sup>7)</sup>은 관주도적·급진적인 점에서 향약 실시상의 단점으로 제기된다. 따라서 기묘사화(1519년)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가 숙청되면서 향약 시행 문제는 외형상 중단하게 된다. 그리고 명종 원년(1545)에 이르러서야 주세붕(1495-1554)의 건의로 각 지방 실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향약이 전개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 시기에 퇴계·율곡 등에 의해 중국의 「여씨향약」의 4대강령이 조선의 실정에 맞는 향약으로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향약시행의 교두보가 되었다.

1571년 율곡은 「여씨향약」 및 「예안향약」을 근거로 「서원향약(西原鄉約)」과 이를 자신이 수정 증보하여 1577년에 「해주향약(海州鄉約)」을 재편성한다. 이들 향약은 조선후기에 가장 널리 보급된 향약으로서 객관성을 지녔고, 조선 후기사에서 굴곡이 있었지만 화서학파의 위정척사에 이론적 기초로서 이항로-김평묵-유종교-유인석-이소응 등이 시도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율곡은 각 지방에서 그 곳 실정에 맞는 향약을 제정·시행하였는데, 그의 나이 25세(명종 15년)에 이미 「과주향약」의 서문을 만들고, 36세에 청주목사로 임명되어 손수 「서원향약」을 지어 백성들에게 시행하게 하였다. 율곡의 만년이라 할 수 있는 42세(선조 10년)에 해주 석담으로 은거한 후에는 「해주향약」을 비롯한 「사창계약속」, 「해주일향약속」 등을 재편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6C 조선조 향약이 성립하는 배경과 가장 완성된 형태로 평가 받는 율곡이 제시한 향약의 입안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4대덕목에 나타난 사회사상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율곡의 이론적 기초에 근거한 향약론은 그의 철학에 있어서 형이상학과 인간의 도덕실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율곡의 이론적 기초에 근거한 향약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율곡 사상 전 체계에서 파악하기보다는, 단독으로 혹은 부분적인 연구에 국한되었다. 본 논고는 율곡 사상의 전 체계에 유의하면서 이론적 기초에 근거한 향약론의 구조와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율곡의 이론적 기초를 먼저 논의하고, 그것이 향약론과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지 밝혀려고 한다.

### 3. 율곡의 우환의식과 향약론

유학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도덕성을 함양하여 도덕을 실천하고, 나아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가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서복관·모종삼은 ‘우환의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서복관은 『중국인성론사』에서 우환의식을 제기하였고, 모종삼은 『中國哲學的特質』에서 서복관의 논의를 확대전개하고 있다.<sup>8)</sup>

이들은 먼저 우환의식의 철학사적인 연원과 의미를 『역전』에서 찾는다. 『주역』 「계사하」 7章에서는 “역이 일어남은 대개 중고시대에 있어서인가? 『주역』을 지은 사람은 대개 우환과 어려움이 있었겠구나?”<sup>9)</sup>라고 하였고, 또한 「계사하」 11章에서는 “역의 흥성함은 대개 상대

7) 『中宗實錄』 卷28, 中宗 12年 7月 甲戌, 第15冊, 284쪽. “成陽人金仁範, 上疏請遂行, 呂氏鄉約, 以變風俗.”

8) 以下 拙稿, 「栗谷의 憂患意識과 社會思想」 2장 우환의식의 발로, 『東西哲學研究』 제35호, 2005, 189-192쪽 參照. 본 논고 1, 2장은 심사요지의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의 말기, 주나라 문왕의 덕업이 바야흐로 성대한 시기에 있는가? 문왕과 紂왕시대에 사정에 해당해서인가?”<sup>10)</sup> 『주역』 「계사하」 5장에서는 또한 상천(上天)의 도를 “인으로써 드러내고, 쓰임에 이르러 그것을 감추니, 만물의 생기를 고동하나 성인과 우환이 같지는 않다.”<sup>11)</sup>고 하였다. 따라서 『역전』에 근거한 유학자들은 우환의식의 가치를 중시하였고, 그것을 인생과정 중에 일어나는 많은 일을 해결하는 준칙으로 삼았다. 이 의미는 당시 『역전』을 저작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았었고,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 우환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환의식은 “기나라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질까 우려하는(杞人憂天)” 쓸데없는 걱정도 아니고, 권력이나 재물의 득실에 대한 불안도 아니며, 인생에 대한 고(苦)나 죄(罪)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인간사의吉凶성패(吉凶成敗)와 당사자의 행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그가 사물과 관계될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즉 만약 인간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이 난관을 극복하여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강렬한 책임감이 그에게서 생겨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 우환의식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환의식은 사물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고 자각의 표현이다.<sup>12)</sup>

『역전』에서 보여주는 천(天) 또는 천도(天道)는 만물을 창생화육(創生化育)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이러한 창생화육의 작용 속에 숨겨져 있는 천도는 우환의식이 없다. 천도는 만물을 창생화육하지만 우환의식이 없고, 오직 성인에게만 우환의식이 있으며 성인이 우려하는 것은 만물이 생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만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것(不得其所)에 대한 것이다. 『역전』에서 보여준 우환의식은 공자와 맹자에게서 더욱 자세하게 나타난다. 공자와 맹자는 주나라 문화의 피폐(疲弊)와 예악이 붕괴되어 극도로 혼란한 난세에 살았으며, 이들은 이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현실세계의 호응을 얻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들에게 강렬한 우환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실현을 위한 노력의 험난한 과정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강렬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스스로 불우(不憂)·불혹(不或)·불구(不懼)하는 군자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현실생활 속의 생명과 이상적 인격 사이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고, 여기에 우환의식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공자는 “덕행을 수양하지 않고, 학문을 연마하지 않고, 옳은 일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고, 불선한 것을 개선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걱정하는 것이다.”<sup>13)</sup>라고 말했다. 맹자 역시 도덕적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환 속에서 살다가 안락하게 죽는다.”<sup>14)</sup>고 했고, 끊임없는 우환의식이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sup>15)</sup>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평가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 이론이나 기본 정신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주관적 해석을 하더라도 보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에 대한 해석은 역사적, 사회적 평가보다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sup>16)</sup> 당시 율

9) 『周易』 『繫辭下』 7章. “易之興也, 其於中古乎? 作易者, 其有憂患?”

10) 『周易』 『繫辭下』 11章. “易之興也, 其當殷之末世, 周之盛德耶? 當文王與紂之事耶?”

11) 『周易』 『繫辭下』 5章. “顯諸仁, 藏諸用, 鼓萬物而不與聖人同憂.”

12) 李明漢, 「儒家哲學의 基本精神과 21世紀」 『中國學報』 41輯, 中國學會, 2000, 498쪽.

13) 『論語』 「述而」 3.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

14) 『孟子』 「告子下」 15. “生於憂患而死於安樂.”

15) 『孟子』 「離婁」 28. “是苦君子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也.”

곡이 고민했던 시대적 상황은 『율곡전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율곡의 우환은 현실인식을 전제로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율곡이 생존했던 16C는 정치가 문란해지고 사회의 연속으로 후일 임진왜란으로 이어지는 사회·정치적 혼란기였다. 그래서 율곡은 당시 사회를 중쇠기로 규정하고 경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나라를 세운지 거의 200년이 지났으니 이는 중쇠기이고, 권간의 탁란하는 화를 많이 겪었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노인의 원기가 다 떨어져 다시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 다행히 성상께서 나오셨으니 이는 장차 다스려질 수도 어지러워질 수도 있는 기미이다. 만일 이때에 분발진작하면 우리나라에 억만년동안 무한한 경사가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장차 무너지고 찾아들어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sup>17)</sup>

이러한 중쇠기적 현상을 율곡은 노인의 원기가 다 떨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과 제도의 폐단이 생기고 인심이 해이하기 때문에 현명한 임금이 일어나서 폐단을 바로 잡고 정치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속에서 우환의식을 가지고 당시의 성리학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경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이처럼 혼란한 16C를 마치 젊은 시절에 주색에 빠져 몸을 망친 사람이 그때는 혈기가 왕성하여 그 폐해를 모르다가 급기야 늙어서 원기가 쇠할 때 그 독기가 폭발하면, 이때에 근신한다 하여도 몸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비유하면서 중쇠기로 비유하였다. 또한 그는 역사에는 흥망성쇠가 있게 마련이며, 한때 어떤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제도나 법제가 다른 시점에서는 그 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땅히 경장을 해야 하는데 경장하지 않는데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율곡은 공직에 나아가기 전 25(1560년)세에 이미 파주 군수 변협이 요청으로 「파주향약」의 서문을 작성한 이후 향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원향약」·「해주향약」·「사창계약속」·「해주일향약속」 등 4가지의 향약을 재정립하였다. 율곡이 향약을 재정립하고 시행한 이유는 이를 통하여 백성들을 교화하여 대동사회의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었다. 율곡은 「서원향약」에서 향약 실시에 대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향약이란 옛날 것이다. 같은 구역에 사는 사람이 도적을 막는데 서로 돕고 병이 들었을 때 서로 구제하고 출입할 때 서로 붙들어주며, 또한 자제들로 하여금 개인이 세운 글방·마을에서 세운 글방·주에서 세운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아 효제의 의리를 다지게 한다. 삼대의 다스림이 융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웠던 것도 진실로 이에 연유한다.<sup>18)</sup>

이처럼 향약의 목적은 향인들간의 공동체사회를 건설하려는 ‘화민성속(化民成俗)’에 있었다. 율곡은 「파주향약」과 「서원향약」에 나타난 실효성을 위해 나라 전체에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보다는 각 향촌단위의 자치적 시행과 향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율곡 향약의 특징으로는, 시행지역마다 그 향약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지역

16) 李明漢, 「儒家哲學의 基本精神과 21세기」, 『中國學報』 41輯, 中國學會, 2000, 495쪽.

17) 『全書』 2, 「經筵日記」(1581, 10월조), 225쪽 上-下. “我朝立國幾二百年, 此是中衰之日, 而多有權姦濁亂之禍, 至於今日, 如老口元氣垂盡, 不可復振, 而幸有聖上出焉, 此是將治將亂之幾也. 若於此時, 奮興振作, 則爲東方億萬年無疆之休, 不然則將至於潰敗漸盡, 而莫之救矣.”

18) 『全書』 1, 卷16, 「雜著」 3, 「西原鄉約」, 340쪽 上. “鄉約, 古也, 同井之人, 守望相助, 疾病相救, 出入相扶, 且使子弟受教於家塾黨庠州序, 以惇孝悌之義, 三代之治隆俗美, 良由是焉.”

에 적합한 성격을 지닌 의의가 있다. 이것은 현재 지방분권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정책담당자들이 경청해야 할 일일 것이다. 이를테면 「서원향약」에서는 향촌의 자치운영적인 조직을 활용하였고,<sup>19)</sup> 「해주향약」에서는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민주적인 운영을 하였으며,<sup>20)</sup> 「사창계약속」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사창법을 운용했으며,<sup>21)</sup> 「해주일향약속」에서는 유향소를 통한 향민들을 위한 향약의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sup>22)</sup> 이것은 선양민, 후교민(先養民, 後教民)하기 위한 환난상휼의 조목에서도 잘 제시되어 있다. 길사나 흥사시 및 생계보조 등 필요시 시의(時宜)에 따라 구휼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재물을 주거나 대여하여 가업을 이을 수 있게 한 점은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운영을 위한 임원선발에 있어서 연령과 덕망 및 학행을 우선한다는 데서 율곡향약의 특징은 두드러진다. 더욱이 임원선정의 경우, 말단 실무자의 경우는 양민·천민을 가리지 않고 선하고 성실한 자를 참여시킨 점은 율곡의 민주·평등의식을 엿볼 수 있다. 율곡은 당시 청주목사라는 행정책임자로서 스스로 선행과 구휼의 치도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청주목사로 부임하면서(1570년) 그 결심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두 군수의 자취를 계승해서 드디어 이전의 규모를 채집하고 「여씨향약」을 참고하여 번거로운 것은 간추리고 소홀한 것은 세밀하게 하여 다시 조약을 만들었다. 비록 감히 중(中)을 얻었다고 스스로 말할 수는 없으나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방법은 거의 큰 누락이 없을 것이다. 얼마 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을원(邑主)이 몸소 행하는 실상이 없으면 계장(契長)에게 명할 수 없을 것이고, 계장이 정직한 선비가 아니면 고을 사람들을 규찰할 수 없을 것이니, 고을 사람들이 선에 나아가고 악을 버리는 것은 계장에 달려 있고, 계장이 보고서 감화케 하거나 격려하는 것은 읍주에게 달려 있다. 나는 당연히 착한 말을 널리 구하고 스스로 힘써서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지만, 계장·유사(有司)도 마땅히 나의 뜻을 법받아 먼저 스스로를 수칙(修飭)하여 고을 사람들을 흥기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고을 사람들이 만약 밋게 보는 뜻이 없어 웃사람의 감화가 마치 바람에 풀쓰러지듯 한다면 「서원향약」은 크게 변할 것이다. 아! 힘써 경계할지이다.<sup>23)</sup>

실제 행정책임자로 이론과 실천의 삶을 살았던 율곡은 목사 자신이 중심이 되어 계장·유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냄으로써 향민들의 용기와 의욕을 진작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율곡은 이러한 결과 향민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sup>24)</sup> 율곡은 이를

19) 『全書』 1, 卷16, 「雜著」 3, 「西原鄉約」, 340쪽 上.

20)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2쪽 下.

21) 『全書』 1, 卷16, 「雜著」 3, 「社倉契約束」, 361-362쪽 下-上. 조남국 교수는 『한국 사상과 경제윤리』(교육과학사, 255쪽 각주8번 參照)에서 生産과 分配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창계약속과 사창법에서 율곡은 사창의 분배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율곡의 이러한 저술에 의하면 경제문제에 있어서 생산과 함께 그 배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과 배분의 중요성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처럼 율곡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도 생산과 배분의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였던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율곡이 이 문제를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 협력하여 해소하려는 방안의 모색으로 향약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2)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一鄉約束」, 363-366쪽 上-上.

23) 『全書』 1, 卷16, 「雜著」 3, 「西原鄉約」, 340쪽 上. “余承二侯之躅, 遂採前規, 參以呂氏鄉約, 煩者簡之, 疏者密之, 更爲條約, 雖不敢自謂得中, 而勸懲之術, 庶幾無大滲漏矣. 既而竊思, 邑主無躬行之實, 則無以令契長, 契長非正直之士, 則無以糾鄉人, 鄉人之趨善去惡, 繫於契長, 契長之觀感激厲, 繫於邑主. 余當敷求善言, 自勸不懈, 契長有司, 亦宜體我之意, 先自修飭, 以起鄉人. 鄉人若無疾視之意, 以致草偃, 則西原之俗, 其不變乎! 嗚呼! 懋戒哉!”

경험으로 하여 「서원향약」에서 동계(洞契)를 근간으로 하고 사인의 서얼·서인의 무직자·공사 천 일률적으로 참여케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sup>25)</sup> 그러나 9개월이라는 짧은 재임기간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렇지만 서원향약은 당시에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조선후기 18C에 향촌에 향약을 적용하는데 기준이 되었고, 화서학과에서 일시적이거나 위정척사론에 운용되기도 하였다.

#### 4. 4대덕목에 나타난 사회사상

율곡은 향약을 조선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그 자신은 지역 행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으로 향약을 실천하였다. 즉 율곡은 1560년에 파주향약의 서문을 지은 것을 비롯하여, 청주목사로 재직중이던 1571년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었고, 1574년 해주로 돌아가 수년간 「해주향약」과 「사창계약속」, 「해주일향약속」 등을 만들어 실시한 것 등이 좋은 예이다.

물론 향약공동체의 가입은 위로부터의 관청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제성을 지닌 것이 아니었고, 향촌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향약공동체의 성원으로 가입한 입약자는 향약공동체의 규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또한 위약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행한 이유는 공동체적 단결과 화목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율곡향약의 이론적 강령인 4대덕목을 살펴보면 공동체내에서 각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며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에 대해 적극적인 공동체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약공동체의 규약은 공동체적 생활규범이며, 공동체적 규약으로서의 향약의 골자는 4개 강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율곡의 향약 4대덕목에는 근본적으로 사회사상이 잘 담겨 있다. 율곡 향약의 내용은 「여씨향약(呂氏鄉約)」과 같이 4대덕목인 덕업상권(德業相勸)·예속상교(禮俗相交)·과실상규(過失相規)·환난상휼(患難相恤)으로 구성되었으며, 향약운영을 위한 「향회독약법(鄉會讀約法)」을 뒷장에 첨부해서 서술하고 있다.

##### 1) 덕업상권(德業相勸)

덕업상권은 한 고을의 사람들이 서로 힘써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으로 오류를 비롯한 공사간의 유학덕목이 집결되어 있다.<sup>26)</sup>

무릇 한 고을의 약속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덕업을 서로 권하는 것이고, 둘째는 허물을 서로 바로잡는 것이며, 셋째는 예속으로 서로 사귀는 것이고, 넷째는 환란에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무릇 선악이 드러나게 특이한 자는 선적과 악적에 기록하였다가 허물을 고치면 지위버린다.<sup>27)</sup>

24) 『全書』 1, 卷16, 「雜著」 3, 「西原鄉約」, 「鄉會讀約法」, 341-342쪽 下-下. 「海州一鄉約束」, 「鄉會讀約法」, 352-355쪽 上-上.

25) 『全書』 1, 卷16, 「雜著」 3, 「西原鄉約」, 342쪽 上.

26)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一鄉約束」, 363쪽 下. “所謂德業相勸者, 一鄉之人相勉爲善.”

27)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一鄉約束」, 363쪽 下. “凡一鄉約束有四, 一曰德業相勸, 二曰過失相規, 三曰禮俗相交, 四曰患難相恤. 凡善惡之表表著異者, 書于善籍惡籍, 改過則反之.”

먼저 덕업상권을 살펴보면 율곡은 ‘덕’과 ‘업’으로 구분하여 실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德이란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국가에는 충성하고, 형제간에는 우애하고, 어른에게는 공경하며, 도로 몸을 다스리고, 예로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며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하고, 행동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하며 분노와 욕심을 억누르고 聲色을 멀리 하며, 선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제사에는 정성을 다하고, 초상에는 슬픔을 다하며, 종족과 화목하며 이웃과 사귀고, 친구를 가려 어진 이를 가까이 하며 바른 도로 자식을 가르치고 근엄한 법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며, 가난할 때에도 청렴한 지조를 지키고, 부유해져도 예로 사양함을 좋아하는 따위를 이르는 것이다.

業이란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며 예를 익히고 數를 밝히며 집안을 엄숙하게 다스리고 과정을 신중히 하며, 살림살이를 구차스럽게 하지 않고 남을 구제하되 인을 행하며, 약속한 것을 실천하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며, 환난을 구제하고, 널리 은혜를 베풀며, 남에게 선을 하도록 인도하고, 남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하고, 대중을 위하여 일을 성사시키며, 서로 싸우는 것을 화해시키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며, 이로운 것을 일으켜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 관직에 있어서는 책임을 완수하며, 법령을 두려워하고,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sup>28)</sup>

이러한 덕목들은 윤리적 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상과 장소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행동은 가족-사회-국가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외연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율곡의 덕업은 더욱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율곡 향약의 덕업상권의 내용 중에는 가족간에 지켜야 할 효도·우애·공경·부부간의 분별 등이 가장 많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효도의 개념은 향촌사회로 확대되어 웃어른에 대한 공대와 친척과 이웃간의 화목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함께 구휼하는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21세기 가족주의에 전통성을 가지고 적용해 볼 일이다.

또한 「서원향약」의 경우 덕업상권에 해당하는 선·악의 문제를 총 21개조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율곡은 선악적(善惡籍)을 두어서 권장과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 선한 것 18가지와 악한 것 23가지를 서술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덕업상권의 내용 중 개인적인 것은 행위중심의 실천적인 덕목들이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의 효도, 형제간의 우애, 남녀간의 예절, 자녀에 대한 교육 등의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수양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향촌지역에서의 연장자에 대한 공경, 청렴과 절개, 사양, 약령의 준수, 환난의 구제, 은혜를 배품, 선도, 과실의 규제, 투쟁을 말리고 시비를 가리는 실천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가로 외연 확장해서는 진실무망으로써 임금을 섬기고 직분을 지켜서 대공무사하게 봉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덕업의 내용은 현재도 간단하게 실천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논자는 가치관과 도덕성이 상실되어 가는 지금, 효도·우애·공손·분별·신의·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

28)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5쪽 上. “德, 謂孝於父母. 忠於國家. 友于兄弟. 弟于長上. 治身以道. 正家以禮. 言必忠信. 行必篤敬. 懲忿窒慾. 放聲遠色. 見善必行. 聞過必改. 祭盡其誠. 喪致其哀. 睦族交鄰. 擇友親仁. 教子有方. 御下有法. 貧守廉介. 富好禮讓之類. 業. 謂讀書窮理. 習禮明數. 能肅家政. 能謹課程. 營家不苟. 濟物行仁. 能踐約信. 能受寄託. 能救患難. 能廣施惠. 能導人爲善. 能規人過失. 能爲人謀事. 能爲衆集事. 能解鬭爭. 能決是非. 能興利除害. 能居官學職. 能畏法令. 能謹租賦之類.”

29) 『全書』 1, 卷16, 「雜著」 3, 「西原鄉約」, 340쪽 下. “置善惡籍, 以昭勸戒. 所謂善者, 能孝父母, 能友兄弟, 能治家政, (內外齊整) 能睦親故, 能和鄰里, 能以儒行持身, 能以義訓子弟, 能守廉介, 能廣施惠, 能勤學問, 能謹租賦, 能遵約令, 能與人有信, 能導人爲善, 能解人鬭爭, 能救人患難, 能伸人冤枉, 能辨人曲直之類. 所謂惡者, 不孝不慈, 不友不悌, 不敬師傅, 夫婦無別, 疏薄正妻, 朋友無信, 臨喪不哀, 不敬祀事, 崇信異端, 輕蔑禮法, 好作淫祀, 族類不睦, 鄰里不和, 少陵長賤陵貴, 縱酒賭博, 好訟喜鬭, 恃強凌弱, 造言誣毀, 不謹租賦, 不畏法令, 營私太甚, 挾妓宴飲, 怠惰廢事之類. 有司色掌別檢, 掌其籍, 隨所聞, 從實記之.”

는 덕업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2) 과실상규(過失相規)

율곡은 향촌사회에서의 화민성숙을 위해 과실상규를 통해 향촌의 질서의를 고취하려고 노력했다. 향약에 나타난 과실의 상호규제는 오히려 악을 징계하여(懲惡) 선을 권장하는(勸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율곡은 과실상규의 강목으로, 덕업의 실천여부를 규제(規戒)하는 것으로 의(義)를 범하는 6가지, 약(約)을 범하는 4가지, 수신하지 않는 5가지를 세밀하게 논하고 있다.<sup>30)</sup>

과실상규에 관한 각 향약의 특색은 「서원향약」의 경우, 나이 30이하인 사람으로 글도 배우지 않고 무예도 연마하지 않는 경우에 허물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모두 「소학」·「효경」·「동자습」 등의 글을 읽게 하며, 읽지 않은 자는 벌줄 것을 논하고 있다.<sup>31)</sup> 「해주향약」의 경우 과실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자신이 수양하지 않는 허물 5가지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해주일향약속」에서는 과실을 벌의 종류대로 구체적인 기술을 하는데, 벌의 내용이 다른 향약에서와는 달리 신체적인 규제는 없고 연령에 따라 시행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sup>33)</sup>

이와 같은 과실상규의 사회사상은 구체적인 예속상교와 환난상휼을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율곡의 과실상규에 나타난 과실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시행방법을 통해 동약인들을 결속시키는 공동체의식은 물론이고 향촌사회의 기틀을 바로잡는데 있었다. 또한 과실상규는 그 내용이 도덕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에 치중해서 지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타인을 무고하거나 폭행상해하는 행위의 처벌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휴머니즘과 인도주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의 예속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공동체의식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조목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현상들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회사상의 긴요한 조목이라고 할 수 있다.

## 3) 예속상교(禮俗相交)

예속상교는 동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예의범절과 습속으로 화민성숙에 필요한 조목이다. 이 예속상교는 유교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향촌사회의 질서와 안정은 물론이고 공동체의식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습속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속상교는 덕업상권의 실천목표로서 예속으로 사귀는 4가지, 방문시 행위 요령 3가지, 초청했을 때 영송하는 절차 4가지, 경조사시에 증유(贈遺)의 4가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존자(尊者)와 유아(幼者)사이에 동아리가 모두 5등급이다. 둘째, 찾아가 뵈

30)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5-346쪽 下-下. “過失, 謂犯義之過六. 一曰嬉戲無度, 二曰忿爭鬪訟, 三曰行多踰違, 四曰言不忠信, 五曰營私太甚, 六曰不斥異端. 犯約之過四, 一曰德業不相勸, 二曰過失不相規, 三曰禮俗不相成, 四曰患難不相恤. 不修之過五. 一曰交非其人, 二曰浪游惰業, 三曰動作無儀, 四曰臨事不恪, 五曰用度不節.”

31) 『全書』 1, 卷16, 「雜著」 3, 「西原鄉約」, 341쪽 上.

32)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6쪽 上-下.

33)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一鄉約束」, 363-364쪽 下-下. 이처럼 율곡의 과실상규에 나타난 사회사상은 여러 향약의 과실상규에서 그 과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세목을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벌을 구분하여 과벌함으로써 대공무사하게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상벌의 공정한 시행을 대공무사하게 처리함으로써 형식적인 과벌의 적용을 피하려고 했음을 살필 수 있다.

고 절하는데 세 조목이 있다. 셋째, 초청하는 일과 맞이하고 전송함에 모두 네 가지 조목이 있다. 넷째, 경조에 물품을 보내는데 모두 네 가지 조목이 있다.<sup>34)</sup>

그리고 「해주향약」의 예속상교는 장유의 예의를 위해 수직적 위계질서의 단계를 규정하고 연령을 근본으로 그 예우에 정하되 덕위(德位)에 따라서 수직적 위계를 달리함을 제시하고 있다.<sup>35)</sup> 「사창계약속」에서는 장유의 예가 「해주향약」과 비슷하지만 다만 계원 중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예우가 특징이며,<sup>36)</sup> 「해주일향약속」은 다른 향약과는 달리 나이가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sup>37)</sup> 이러한 율곡의 예속상교에 나타난 사회사상은 존자·장자·적자·소자·유자 사이에서 각기 자신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덕목으로 발휘되었다. 즉 예속상교의 내용은 실천을 위한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 고취를 통해 전통적인 습속을 계승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것은 오늘날 노인인구의 증가로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철된 세상에 율곡 향약의 예속상교는 21C 공동체를 위해 충분한 치유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 4) 환난상휼(患難相恤)

환난상휼은 환난을 서로 구제한다는 것으로 공동체의식의 실천이자 오늘날 적용가능성이 적절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4대덕목 가운데 마지막 덕목인 환난상휼은 질병, 가난, 상사(喪事) 등의 환난을 당했을 때 서로 구제한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실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율곡의 환난상휼은 애민론과 양민론에 기초를 두고 약원들 상호간의 경제적인 상부상조를 통해 향촌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킨 토대위에 도덕적 향촌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율곡 사회사상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은 환난상휼의 경우를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수재·화재시의 구휼하는 방법, (2) 도적이 들었을 때 대적하는 방법, (3) 향민의 질병구제방법, (4) 상사시의 부의하는 방법, (5) 고아양육의 방법, (6) 무고자 해명방법, (7) 빈곤한 약원의 구휼방법 등<sup>38)</sup>을 제시하고

34)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6-351쪽 下-下. “禮俗之交有四. 一曰尊幼輩行, 凡五等, 其一曰尊者, 謂長於已二十歲以上, 在父行者. 若是師弟子之間, 則年雖不高, 當待以尊者. 其二曰長者, 謂長於已十歲以上, 在兄行者. 若長者或是父執, 或是洞長, 自少致敬者, 或是有德位可尊之人, 則當待以尊者. 其三曰敵者, 謂年上下不滿十歲者, 長者爲稍長, 少者爲稍少. 其四曰少者, 謂少於已十歲以下者. 其五曰幼者, 謂少於已二十歲以下者. 年雖幼少, 而若是有德位可尊之人, 則尊長當使<sub>レ</sub>抗禮, 視以敵者. 二曰造請拜揖, 凡三條. 其一曰幼者於尊者, 歲首之拜, 其二曰幼者見尊者, 門外下馬, 俟於外次, 乃通名. 其三曰, 凡遇尊長於道, 皆徒行則趨進以拜. 尊者與之言則對, 否則拜而退, 立於道下, 俟尊者遠過乃行. 三曰, 請召迎送, 凡四條. 其一曰, 凡請尊者飲食, 必具單子, 親往以請. 若專爲他客設筵, 則不可兼請尊者. 其二曰, 凡聚會坐以齒, 若庶孽及非士族則別序. 雖非士族而學行出人者, 則亦序以齒. 其三曰, 凡宴集初坐, 別設卓子於兩楹間, 置大杯於其上, 主人降席, 立於卓東西向, 口上客亦降席, 立於卓西東向. 其四曰, 凡遠出及自遠而歸, 則有送迎之禮, 直月掌其事, 期會一處, 各持酒肴而往, 既會, 拜揖行禮如儀. 四曰, 慶弔贈遺, 凡四條. 其一曰, 凡同約, 有吉事則慶之. 其二曰, 有凶事則弔之. 其三曰同約之喪, 有致奠. 其四曰, 若約員在他鄉身死, 則同約會於一處, 設位而哭, 遣約中幼者一人, 持奠資及祭文膊狀, 往致奠.”

35)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6-351쪽 下-下.

36) 『全書』 1, 卷16, 「雜著」 3, ‘社倉契約束’, 360쪽 下.

37)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一鄉約束’, 365쪽 上.

38)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鄉約’, 351-352쪽 下-上. “患難之事七. 一曰水火, 小則遣人救之, 甚則親往, 多率人, 救且弔之. 若因此絕糧, 則僉議以財濟之. 二曰盜賊, 近者同力追捕, 有力者, 爲告之官司. 三曰疾病, 輕則遣人問之, 甚則爲訪醫藥. 四曰死喪, 弔膊已見上. 若貧乏太甚, 不克襄事者, 則僉議於常膊之外, 加濟以財. 五曰孤弱, 謂約中之人死, 而有子孤弱無依者, 若其家足以自贍, 則擇其親族之忠信幹事者, 使區處, 考<sub>レ</sub>其出納, 族中無其人, 則以約中親切者掌之. 六曰誣枉, 若約中之人, 被人誣訴過惡, 不能自伸者, 勢可以聞於官府則爲言之, 有方略可以解救則爲解之. 或其家因而失所者, 衆共以財濟之. 七曰貧乏, 約中有安貧守分, 而生計窘束, 至於絕食則以財濟之.”

있다.

이처럼 율곡은 재난, 질병, 가난과 상사 등의 환난을 약원들이 서로 도와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선양민, 후교민(先養民, 後教民)함으로써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 어려운 경우에는 물심양면으로 서로간의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회 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목을 들어 구휼의 세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웃에 혹 급한 일이 생기면 비록 동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먼저 이를 들어 알게 된 사람이 또한 마땅히 도와줘야 할 것이다. 혹 힘이 부족하여 도울 수 없으면 그를 위해 동약에게 알려 대책을 상의한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착한 것을 문서에 기록하고 고을 사람에게 알린다.<sup>39)</sup>

특히 「서원향약」에서는 구휼의 대상을 상사(喪事)·천장(遷葬)·질병·무고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sup>40)</sup> 「해주향약」에서는 소재와 화재·도적·질병·상사·고아(孤兒)·무고(誣告)·가난(家難)을 구휼의 경우로 정하고 경제적 상호협조의 구제방법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41)</sup> 또한 「사창계약속」에서는 별도로 사창법을 제정하고 환난에 대비하여 곡물을 비축하였다가 화재·질병·무고·가난 등의 환난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였다.<sup>42)</sup> 또한 「해주일향약속」에서 환난상휼은 일정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경우에 따라 구휼하는 조건을 세밀하게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율곡의 환난상휼에 나타난 사회사상은 애민사상과 덕치로 백성을 위한 민본정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율곡의 교화적 사고가 담긴 그의 향약의 특징에 깃든 함의는 이상정치 구현 이념인 인과 의의 본성을 함유한 덕업과 예속을 향민에게 자치적으로 실천케 하는 향민 교화 성격의 규약이다. 이렇게 덕업상권과 예속상권을 중핵으로 함으로써 향약은 정치적 이상인 덕치, 예치의 보조적 구현 수단이라는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 5. 사회사상의 의의

율곡은 그가 살던 16세기 후반의 정치적 현실을 중쇠기(中衰期) 내지 경장기(更張期)로 단정하고 일대 개혁의 당위를 주장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의 실제이어야 할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동시에 ‘백성을 위하고’(爲民), ‘백성을 이롭게 하고’(利民),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安民) 개혁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4)</sup>

이를 근간으로 율곡은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향약을 제정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율곡은 「증손여씨향약」으로부터 일체의 형식들을 수용하였지만 임원 및 일반약원에 관한 약정, 약원들의 회합, 범약자에 대한 과벌방법 및 내용은 당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다.

39) 『全書』 卷16, 「雜著」 3, 「海州鄉約」, 352쪽 上. “鄰里或有緩急, 雖非同約而先聞知者, 亦當救助, 或力不能救助, 則爲之告于同約而謀之. 有能如此者, 則亦書善於籍, 以告鄉人.”

40) 『全書』 1, 卷16, 「雜著」 3, 「西原鄉約」, 340-341쪽 下-上.

41) 『全書』 1, 卷16, 「雜著」 3, 「海州鄉約」, 351-352쪽 上.

42) 『全書』 1, 卷16, 「雜著」 3, 「社倉契約束」, 360-361쪽 下-下.

43) 尹絲淳, 「栗谷 鄉約의 思想的 性向」, 『栗谷思想研究』, 栗谷學會, 2002, 49쪽.

44) 황의동, 『율곡 사상의 체계적 이해』 2, 서광사, 1977, 91쪽.

따라서 율곡의 4대덕목에 나타난 사회사상을 살펴보면 현실적 안정을 이룬 후에 윤리적 교화와 조화시켜야 한다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율곡 향약의 4대덕목이 갖는 사회사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덕업상권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와 관련된 인격연마로서 충·효를 강조한 실천적 내용들이 주된 것이다. 또한 과실상규도 강제적이고 형식적인 규제의 적용만은 아니다. 즉 자치적인 규제와 자발성을 기초로 하고 그 제재의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를 두고 행위자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 심성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는데 율곡 사회사상의 의의가 있다. 이것은 예속상교가 독립된 덕목이 아니라 덕업상권과 예속상교를 보완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환난상훈은 공동체의식의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이 있으며, 율곡 향약의 ‘선양민, 후교민’(先養民, 後教民)을 위한 사회사상이다. 율곡은 별도로 사창법을 제정하고 환난에 대비하여 곡물을 비축하였다가 화재·질병·무고·가난 등의 환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운용되는 건강보험법이나 일반보험제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사에서 필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즉 그것의 필요성과 의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윤사순 교수는 율곡 향약이 의도한 ‘교화’의 범위는 한낱 사족에 한정되지 않고 서민 대중까지 포괄함으로써 기존 향약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았다. 또 교화내용이나 성격이 민간에게 윤리관을 주입하여 통치체제에 일방적으로 순종하게만 하는 성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제약적 기능까지 발휘한다. 이는 서리들의 봉공 위민적 행동지침에까지 영향을 끼쳐 백성들의 위민 민본적 이상정치를 ‘민관공동’으로 이루게 하는 성향이 짙다. 따라서 율곡이 구상한대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는 향약이 만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더라면, 17C 이후 민생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었을 것<sup>45)</sup>이라는 입론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고는 율곡 향약에 나타난 사회사상의 일단을 고찰하는데 있었다. 그 결과 율곡 향약론은 사회사상의 이론적 기반이 되며, 율곡의 사회사상은 4대덕목의 일관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율곡향약의 4대덕목에 나타난 사회사상은 안민(安民)·위민(爲民)을 1차적인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율곡의 사회사상은 당시 소외되고 억압받던 향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는 선양민(先養民, 後教民)의 민본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율곡 향약의 4대덕목에는 사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인식과 개혁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율곡 사회사상의 특징은 도덕적인 수양의 차원이 사회문제의 해결과 교화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이론체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율곡은 혼란했던 현실에 사회적 이상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율곡은 사회현실과 이상을 대립과 갈등으로 보지 않고 양자를 종합함으로써 역사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면서도 무실(務實)과 시의(時宜)에 따라 사회사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45) 尹絲淳, 「栗谷 鄉約의 思想的 性向」, 『栗谷思想研究』, 栗谷學會, 2002, 55-56쪽.

## 참고문헌

- 李 珥, 『栗谷全書』 1, 2, 大東文化研究院.
- (사) 율곡학회, 『CD-ROM)율곡전집』, 2004.
- 束景南, 『朱子大傳』, 福建教育出版社.
- 高令印, 『朱熹事適考』, 上海人民出版社, 1987.
- 牟宗三, 『心體與性體』 123, 臺灣, 正中書局, 1983.
- 김경식, 『율곡의 향약과 사회교육사상』, 배영사, 1983.
- 李明漢, 「儒家哲學의 基本精神과 21세기」, 『中國學報』 41輯, 中國學會, 2000.
- 尹絲淳, 「栗谷 鄉約의 思想的 性向」, 『栗谷思想研究』, 栗谷學會, 2002.
-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 조남국, 『한국사상과 경제윤리』, 교육과학사, 1994.
- 최문형, 「율곡향약의 현대적 조명」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회, 2002.
- 최승순, 「율곡의 교학사상 연구」, 『강원문화논집』, 2002.
- 황의동, 『율곡 사상의 체계적 이해』 1·2, 서광사, 1977.
- 황준연, 『율곡철학의 이해』, 서광사, 1995.
- 拙 稿, 『栗谷의 修養工夫論』, 국학자료원, 2002년.
- 拙 稿, 「栗谷의 憂患意識과 社會思想」, 『東西哲學研究』, 韓國東西哲學會, 2005.
- Michael c. kalton, *The four-seven debate*, state university of newyork press.
-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Edward Y.J. Chung, *The Korean Neo-Confucianism Of Yi T'oegye and Yi Yulgok*, state university of newyork press.

## **A Study on the Social Thought appeared on Yulgok Hyangyak**

Sung-sun, Yu

Yulgok believed that if Hyangyak were not practiced on the national scale or were not bring up the populace, it would not accomplish its purpose. Because, he thought that it will be made of the formal and simply enlightening practice will be baffled in the purpose of reprovig vice and rewarding virtue for the villager's better life. Especially in the case of rural agreements written by Yulgok as a governor were planned for Confucian, first of all. We can say that Yulgok Hyangyak contain and reflects his social thought. Mutual suggestion of virtue has a meanings that built up one's a character when each individual practises concrete virtues in social groups. The Yulgok Hyangyak emphasize and heads for forming cooperation of the life. In these views it is worth while to relight Yulgok's Hyangyak that had effected on our tradition. We put all values in material things, so we are now loseing theory of mind-cultivation. Therefore, Yulgok's the Social Thought appeared on Four Virtues Embodied in Yulgok Hyangyak is characterized as his consistent system of thought which ranges widely from moral cultivation to the resolving the social problems and civilization of society.

**Key Words:** Social Thought, Worried Mind, Duckupsankun(德業相勸), Guasilsanggu(過失相規), Yisoksangkyo(禮俗相交), Hyannansanghul (患難相恤).